

안전·보건 관리규정

[2022.03.23. - REV.1]

근로자 위원		사용자 위원	
근로자 대표	황 광 훈 (인)	위 원 장	이 화 원 (인)
근로자 대표	(인)	사용자위원	(인)
근로자 대표	(인)	사용자위원	(인)
근로자 대표	(인)	사용자위원	(인)

- 목 차 -

제 1 장 총 칙

제 2 장 안전·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

제 3 장 안전·보건교육

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

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

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
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

제 8 장 보 칙

[제 1 장 총 칙]

1. 목 적

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“법”),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)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) 및 노동부 고시(이하 “고시”)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“동아기술개발(주)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은 물론 회사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 정신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안전·보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이 규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.

- 가. “산업재해”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- 나. “안전관리” 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,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.
- 다. “보건관리” 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.

- 라. “사업장”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- 마. “현장”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.
- 바. “안전보건총괄책임자”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.
- 사.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”라 함은 협력업체 사업장을 총괄·관리하는 자로 한다.
- 아. “관리감독자”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자. “안전관리자”라 함은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.
- 차. “보건관리자”라 함은 보건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.
- 카. “안전보조자”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말한다.
- 타. “일일안전소장”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일일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.

4. 업무주관부서

- 가.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보건팀으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, 통제를 받아야 한다.
- 나.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,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.

5. 안전보건업무의 우선

- 가.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.
- 나.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, 인력,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
6.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

- 가.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 책임이 있다.
- 나.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7.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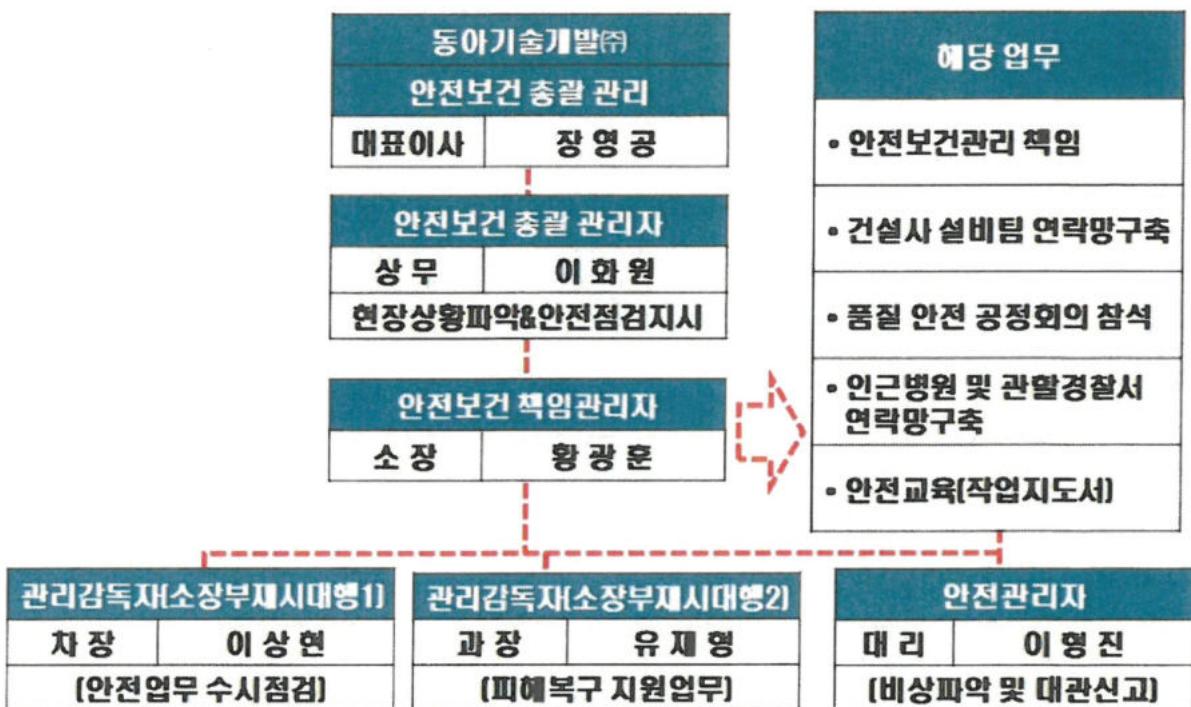
- 가. 20억 이상의 협력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한다.
- 나. 각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지휘, 통제를 받아야 한다.
- 다. 원청사에서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, 조정하고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.
- 라.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안전 ·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

1. 안전 · 보건관리조직

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업무를 분장 운영한다.

조 직 도



2. 직무

가.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안전보건총괄책임자)

- 1)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
- 2)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
- 3)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
- 4)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
- 5)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
- 6)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
- 7) 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
- 8)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
- 9) 근로자 유해위험예방조치(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 관한 사항)
- 10)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
- 11)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및 재개
- 12) 노사협의체 운영
- 13) 현장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
- 14)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
- 15)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하여 협력업체와 협의
- 16) 유해·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여부 확인
- 17)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(법 제41조의2)

나. 관리감독자

- 1)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이상 유무의 확인
- 2)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
- 3)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4)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
- 5) 사업장의 산업보건의·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
- 6)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- 7) 기타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8)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

다. 안전관리자

- 1) 안전장비 · 보호구등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
- 2)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- 3) 현장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에 대한 건의
- 4)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
- 5)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·기록의 유지관리
- 6)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건의
- 7)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8) 안전시설 불량작업에 대한 공사중단 및 재개 조치 건의
- 9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사항
- 10) 안전사고 / 월출력 및 재해현황 보고
- 11) 무재해운동추진 및 안전행사에 관한사항
- 12) 관리책임자등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
- 13) 기타 각종 안전서류 비치 및 유지관리

라. 보건관리자 - “당현장은 보건관리자 의무대상이 아닙니다.”

- 1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2) 안전인증대상 기계 · 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· 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(保護具)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3)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4)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5)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)
- 6)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
- 7)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(1)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
 - (2)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- (3) 부상 ·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- (4)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- (5) (1)목부터 (4)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- 8)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

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
- 9) 사업장 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의 건의
- 10)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·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11)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· 관리 ·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12)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- 13)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· 유지
- 14)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- 15)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

3.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가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, 운영 대상사업장, 구성위원, 위원장, 회의개최 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에 의한다.

- 1)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2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3)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·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
- 4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한다.

나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)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)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4)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- 5)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6)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7)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- 8)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4.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위촉 시)

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.

가. 위촉대상

- 1)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
- 2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- 3)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- 4)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다. 업무범위

- 1)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- 2)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·기구 자체 검사 입회
- 3)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- 4)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- 5)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- 6)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- 7)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
- 8)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- 9)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- 10)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·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5. 작업지휘자

가. 다음 작업의 경우 종사근로자 중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) 지게차, 셔블로우더,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
- 2)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·하차하는 작업
- 3) 불도저, 모우터그레이더, 로우더(무한궤도, 타이어), 스크레이퍼, 스크레이퍼, 도우저, 파워셔블, 드레글라인, 그램셀, 버킷굴삭기, 트랜취, 항타기, 어스드릴, 어스오우거, 리버어스, 셔어클레이션드릴, 천공기(죠빙머신 있는 것에 한함), 페이퍼드레인머신, 로울러 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정착 및 해체작업
- 4) 항타기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
- 5) 크레인, 데릭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
- 6) 폭발성, 발화성, 산화성,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- 7)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
- 8) 산소결핍 위험작업장
- 9) 고기압하의 작업

나. 작업지휘자는 상기 “가”의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안전 · 보건교육

1. 신규채용자교육

- 가. 교육대상자 : 신규채용자
- 나. 교육시기 : 담당업무 종사 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(4시간)
- 다. 교육방법 : 법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서 실시
- 라. 교육내용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 - 1)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
 - 2)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 - 3)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
 - 4)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

2. 작업내용변경시 교육

- 가. 교육대상자 : 작업내용 변경자
- 나. 교육시기 : 변경업무 개시 전
- 다. 교육방법 :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.
- 라. 교육내용
 - 1)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 - 2) 작업 개시 전 절검에 관한 사항
 - 3)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 - 4)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 - 5)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- 6)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 - 7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3. 특별안전보건교육

- 가. 교육대상자 : 영 별표2의 각호에 규정된 작업종사자
- 나. 교육시간 : 건설업은 2시간 이상
- 다. 교육방법 :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제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.